의안번호	2218190
의 뢰 인	이종욱 의원
회 답 일	2026. 4. 10.
추계번호	26E20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8년 2,556억원, 2034년 2,648억원 등 7년간 총 3조 9,697억원(연평균 5,67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누적	연평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제30조)	−2,556	−5,279	−8,177	−8,034	−7,874	−5,129	−2,648	−39,697	−5,671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 12. 31. (개정안) 2029. 12. 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징수기준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가 이루어지는 2028년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

❑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 신고된 감면액을 바탕으로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신고된 감면액은 과거 취업자에 대한 누적 금액이므로, 이를 전체 감면기간으로 나눈 연단위 금액으로 환산하여 신규 취업자에 대한 효과로 배분

청년 (5년간 감면)	감면액 발생 시점				
	2021	2022	2023	2024	2025
2020년 취업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2021년 취업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2022년 취업자			1년차	2년차	3년차
2023년 취업자				1년차	2년차
2024년 취업자					1년차

○ 2024년 귀속소득(2025년 발생)을 기준으로 연단위 환산액을 계산한 후, 향후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명목임금상승률[1]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

❑ 동 추계에서 활용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는 신고 기준으로 집계된 자료로 실제 발생한 금액 등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1)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2025.9.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중소기업[2]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하여 취업 후 3년(청년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

○ (감면 대상) 청년・노인・장애인 등・경력단절여성

○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 (감면율) 70% (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026. 12. 31.

❑ 동 감면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11년 도입(2012년 취업자부터 적용)된 후, 점차적으로 확대

[표 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주요 개정사항

개정일	감면 대상		취업 후 감면 기간	감면율	연간 감면 한도
	대상	청년의 범위			
'11.12.31.	청년	15세~29세	3년	100%	없음
'14.1.1.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15세~29세	3년	50%	없음
'15.12.15.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15세~29세	3년	70%	150만원
'16.12.20.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경력단절여성	15세~29세	3년	70%	150만원
'18.5.29.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경력단절여성	15세~34세	3년 (청년: 5년)	70% (청년: 90%)	150만원
'22.12.31.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경력단절여성	15세~34세	3년 (청년: 5년)	70% (청년: 90%)	200만원
'25.3.14.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경력단절근로자	15세~34세	3년 (청년: 5년)	70% (청년: 90%)	200만원

주: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감면실적) 2021년 8,397억원에서 2025년 1조 1,638억원(잠정치)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표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2021~2025년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p
감면액	8,397	9,667	9,609	11,384	11,638

주: p는 잠정치
자료: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2) 추계 방법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신고된 감면액(2024년 귀속소득)을 연단위로 환산 후 연도별로 배분하며,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명목임금상승률에 따라 향후 연단위 환산액이 증가할 것을 가정하여 세수효과를 산출

○ 감면율 70%대상(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자) 감면신고액: 1,013억원

– 감면기간(3년)으로 나누어 연단위 환산액(2024년 귀속기준 338억원)으로 계산

○ 감면율 90%대상(청년) 감면신고액: 9,926억원

– 감면기간(5년)으로 나누어 연단위 환산액(2024년 귀속기준 1,985억원)으로 계산

[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에 따른 감면액 발생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자	감면액 발생 시점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27년 취업자	*372*	*384*	*396*				
2028년 취업자		*384*	*396*	*409*			
2029년 취업자			*396*	*409*	*422*		

청년	감면액 발생 시점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27년 취업자	*2,185*	*2,256*	*2,329*	*2,405*	*2,484*		
2028년 취업자		*2,256*	*2,329*	*2,405*	*2,484*	*2,565*	
2029년 취업자			*2,329*	*2,405*	*2,484*	*2,565*	*2,648*

(3) 추계결과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8년

2,556억원, 2034년 2,648억원 등 7년간 총 3조 9,697억원(연평균 5,67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누적	연평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제30조)	−2,556	−5,279	−8,177	−8,034	−7,874	−5,129	−2,648	−39,697	−5,671

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이정훈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정훈	02−6788−4669	nororand@assembly.go.kr